

## 예산결산위원회

2020.04.19. 제1기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20.10.26. 제2기 전국운영위원회 1차 개정

2020.12.21. 제2기 전국운영위원회 2차 개정

2021.02.23. 제2기 전국운영위원회 3차 개정

2021.06.28. 제2기 전국운영위원회 4차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26조(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 업무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선출방법)** ① 중앙예산결산위원회(이하 “중앙예결위”)는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 위원장과 전문가 등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 도당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시 · 도당 예결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예결위 위원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대표는 위원 추천 시 권리당원 공모절차와 선출 선거를 통해 확정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당직자 선출 선거를 준용한다.

④ 공모의 지원자 미달 및 위원의 상시적 결위 시, 위원 추천은 본 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시 · 도당 예결위 위원은 시 ·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 ·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이 결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인준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산하에 회계감사소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다른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예산결산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① 중앙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중앙예결위 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② 시 · 도당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예결위 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제4조(권한)** ①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중앙예결위) 혹은 사무처장(시·도당 예결위)으로부터, 차기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한다. 단 제출 단위의 결정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별 마감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예결위는 전국운영위원회, 시·도당 예결위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당, 시·도당, 전국운영위원회직속기구 등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필요 시 감사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 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본 조 제3항 및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국(사무처)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 예산결산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장이 본 조 제1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8조(예산편성)** ①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기구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수립이 적절한가를 심의하여 예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 ①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중앙예결위는 분기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구는 시정계획서를 첨부하여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자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 · 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구는 시정계획서를 첨부하여 시 ·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자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무총장(사무처장)은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 착수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감사)** ① 중앙예결위는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 대상은 당의 모든 기구로 한다.

③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④ 특별감사 기간은 중앙예결위에서 정한다.

⑤ 중앙예결위는 특별감사 내용을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구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임 등)** 기타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 본 당규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